

##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공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보위') 위원 위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직인생략)

### 위촉 개요

#### 1. 위촉 기간 및 인원

가. 위촉 기간: 2024. 3. 28. ~ 2026. 3. 27.(2년)

나. 위촉 인원: 27명

다. 위촉 영역 및 인원

영역	교원 (현직, 퇴직)	경찰	변호사	전문가 (성 상담 분쟁조정 특수교육)	학부모
(명)	9	3	3	3	9

비고

-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함
- ※ 교원 위원의 수가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
- ※ 영역별 위원 인원은 관련 법령 개정 및 위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 2. 지역교보위 역할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의 사항

## II 위원 영역별 지원 자격 및 제출[증명] 서류

### 1. 지원 공통 사항

가.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은 1회에 한함

※ 총 임기는 4년 이내로 제한함

나. (연령) 임기 시작일(2024. 3. 28.) 기준, 연령이 65세 이하인 자(1958. 3. 29. 이후 출생자)까지 지원 가능(나이는 민법 제158조에 따름)

다. (지원 방법) 본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추천서 및 서류 등 제출

라. (선정 방법) 지원자 및 추천자를 대상으로 선발심사위원회를 통해 교육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

※ 경찰, 변호사 위원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위촉 추진

마. (유의 사항)

1) 서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으로 중복 지원 불가

2) 동·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으로 활동 중일 시 지원 불가

3)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지원 및 활동 중일 시 지원 불가

※ 중복 확인 시 모든 교육지원청 교보위에서 선정 제외

## 2. 영역별 지원 자격 기준(요건) 및 제출(증명) 서류

위원 영역	자격 기준(요건)(2024. 3. 27.일 기준)		지원자격 증명서류	공통 제출서류
교원	현직	▶ 동부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교원으로서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퇴직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퇴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학부모	▶ 동부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학부모인 자 (단, 임기 내에 자녀가 재학 중이어야 함) ※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는 제외		- 자녀 재학 증명서	
경찰	▶ 동부교육지원청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전문가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 - 성, 상담, 분쟁 조정, 특수교육 영역 전문가로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경력증명서 - 자격증	

### III 지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1. 제출 기간

제출 기간	관련 문의
2024. 3. 5.(화) 09:30부터 3. 11.(월) 11:30까지	장학사 정지현(☎605-5766) 주무관 김지호(☎605-5767)

## 2. 제출 서류

영역	공통제출서류	지원추천(신청)서	기타서류	해당자 제출
현직교원	- 주민등록초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서식 4]	- 지원 추천서 [서식 1-1]	- 역할계획서[서식3] - 영역별 지원 자격 기준(요건) 증명서류 (p.3 참조) - 경력증빙서류[서식 2] (p.5 참조)	- 가산 자격증 [하단 해당자 제출 서류 참조]
학부모				
경찰		- 지원 신청서 [서식 1-2]	- 역할계획서[서식3] - 영역별 지원 자격 기준(요건) 증명서류 (p.3 참조) - 경력증빙서류[서식 2] (p.5 참조)	
변호사				
퇴직교원				
전문가				

- 단, 기관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위촉장 등) 제출 가능

### ※ 해당자 제출 서류(가산 자격증)

- 지원 신청서 및 추천서의 <자격증>란 ‘있음’에  표시했을 경우, 연관된 자격증(성, 상담, 분쟁 조정, 특수교육 영역)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예) 성 전문가 분야 지원자가 상담 관련 자격증 제출 시 가산점 인정  
 성 전문가 분야 지원자가 성 관련 자격증 중복 제출 시 가산점 미인정  
 교원, 학부모 지원자가 상담 관련 자격증 제출 시 가산점 인정

※ 지원 영역별 <주요 활동 경력> 증빙 서류

위원영역	주요 활동 경력 증빙 서류 (2024. 3. 27. 기준)
교원 (현직 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생활지도 업무 경력</li> <li>-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경력</li> <li>-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경력</li> <li>-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 경력</li> <li>-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경력</li> </ul> <p>※ 최근 10년 이내,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장 등 제출</p>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경력</li> <li>-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경력</li> <li>-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 경력</li> <li>-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경력</li> </ul> <p>※ 최근 10년 이내,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장 등 제출</p>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경력</li> <li>-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경력</li> <li>-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 경력</li> <li>-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경력</li> <li>- 해당 업무 관련 경력</li> </ul> <p>※ 최근 10년 이내,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장 등 제출</p>

### 3. 제출 방법

영역	제출 방법
교원(현직) 경찰 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별 공문 발송(pdf 파일로 관련 서류 제출)</li> <li>- 수신처: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li> </ul>
교원(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 제출(신분증 지참)</li> <li>• 대리인 제출 가능(대리인 신분증 지참, 위임장 제출)</li> </ul>
학부모	- 09:30~17:00 (단, 11:30~13:00 제외, 11일은 11:30까지)
전문가	- 제출처: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5층 학교지원센터

## IV 심사 일정 및 방법

### 1. 1차 서류 심사

가. 서류 심사 대상: 교원(현·퇴직), 전문가, 학부모 위원

※ 경찰, 변호사 위원 - 1차 및 2차 심사 면제, 해당 기관 추천자 위촉

나. 서류 심사 방법: 필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차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다. 선발 인원: 영역별 최종 선발인원의 1.5배수를 2차 면접 대상자로 선정

영역	교원 (현직, 퇴직)	경찰	변호사	전문가 (성, 상담, 분쟁 조정, 특수교육)	학부모
27	9	3	3	3	9
<b>1차 선발 인원</b>	<b>14</b>			<b>5</b>	<b>14</b>

※ 접수 인원이 영역별 선발 인원 미달한 경우

- 전원 2차 면접 대상자로 선정

라. 1차 합격자 발표: [2024. 3. 14.\(목\)](#) (2차 면접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2. 2차 면접 심사

가. 면접 심사 대상: 1차 서류 심사 합격자

나. 면접 심사 방법: 2차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다. 면접 심사 일자: [2024. 3. 18.\(월\)](#)

라. 면접 심사 장소: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

※ 면접심사 일정 및 장소는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개별 안내 예정

### 3. 최종 합격자 결정

○ 영역별로 1차, 2차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선정함 (단, 2차 및 최종 합산 점수가 각 기준에 미달할 경우, 불합격 처리)

### 4. 최종합격자 발표 및 연수

가.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3. 20.\(수\)](#) (개별 통보, 학교 및 유관기관 안내)

나. 위촉장 수여 및 연수: [2024. 3. 22.\(금\)](#) (필수 참석)

## V 기타 안내 사항

### 1. 심사 시행 일반 원칙

- 가.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지원 신청서의 기재 사항 착오,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 미비, 구비서류 미제출, 공고된 사항의 미숙지 또는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 사유로 함
- 다. 지원 영역별 자격(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 영역에 부합되지 않은 자격(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서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으로 중복 지원한 경우, 동·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으로 활동 중인 경우,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지원 및 활동 중일 시 지원 불가함
- 라. 1, 2차 심사와 관련된 심사 기준, 개인별 점수 등은 일절 공개하지 않음
- 마.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활동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요청 예정
- 바.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역량강화 연수]에 참석 필수
- 사. 심의위원은 매주 1~2회 참석이 가능하여야 함.
- 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심사 수당 지급
- 자.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선발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2. 위원의 해촉 사유 및 자격 상실

- 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의 사유

- 현직 지역교보위 위원임을 의도적으로 공개하여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변호사 위원이 동부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교권침해사안을 수임한 경우
- 지역교보위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물의 및 민원을 야기한 경우 등

- 라.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포기원 제출)
- 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해당 안전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이거나 해당 안전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바. 학부모위원 중 그 자녀가 동부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 사. 현직교원이 동부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에 재직하지 않는 경우
- 아. 경찰이 동부교육지원청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되지 않는 경우
- 자. 학부모위원 중 그 자녀가 광주광역시동부교육청 관할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 차. 위촉자 결정 통지 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본 공고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누리집 (<https://dongbu.gen.go.kr/>) ▶ 행정정보 ▶ 공지사항]란에 탑재 공고합니다.



[서식1-1] 지원 추천서 [현직교원, 학부모, 경찰, 변호사 영역]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지원 추천서

		접수번호		
성명	(서명)			
생년월일	19년 월 일(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연락처	휴대폰	
소속(직장) ※학부모의 경우 자녀 소속교/학년	소속(소속교):  직급(학년):		E-mail	
주소				
지원영역	<input type="checkbox"/> 현직교원 (특수 <input type="checkbox"/> / 상담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학부모(자녀가 특수교육대상자일 경우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경찰	<input type="checkbox"/>	변호사	
가산 자격증	<input type="checkbox"/> 있음(자격증 종목: ) <input type="checkbox"/> 없음			
활동 가능일	<input type="checkbox"/> 월요일 <input type="checkbox"/> 화요일 <input type="checkbox"/> 수요일 <input type="checkbox"/> 목요일 <input type="checkbox"/> 금요일 ※ 참석이 가능한 요일(13:30부터, 사안검토시간 포함)에 모두 표시			
보호위원 역할	보호위원회의 모든 역할(위원장 및 사실확인 등)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주요 활동 경력	※ 기재 경력을 증명할 증명서 제출 필수 ([서식2] 활용) ※ 동일 기간 경력 중복 시, 한 개의 경력만 인정			
	예시) - ○○학교 학생생활부장 (2020.~2023.) -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 2년 (2022.~2023.) - ○○○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2020.~2021.)			
타 조직 활동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서부 지역교권보호위원,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활동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추천 사유				
<b>학교(기관·부서)장 추천서</b> 위 사람을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함 2024년 월 일 ○○○ 학교(기관·부서)장 (직인)				

[서식1-2] 지원 신청서 [퇴직교원, 전문가 영역]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지원 신청서

		접 수 번 호	
성 명		연 락 처	휴대폰
생년월일	19 년 월 일(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		E-mail
소속(직장)	소속: 직급:		
주 소			
지원 영역	<input type="checkbox"/> 퇴직교원 (특수 <input type="checkbox"/> / 상담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전문가(성 <input type="checkbox"/> / 상담 <input type="checkbox"/> / 분쟁조정 <input type="checkbox"/> / 특수교육 <input type="checkbox"/> )		
가산자격증	<input type="checkbox"/> 있음 (자격증 종목: ) <input type="checkbox"/> 없음		
활동 가능일	<input type="checkbox"/> 월요일 <input type="checkbox"/> 화요일 <input type="checkbox"/> 수요일 <input type="checkbox"/> 목요일 <input type="checkbox"/> 금요일 ※ 참석이 가능한 요일(13:30부터, 사안검토시간 포함)에 모두 표시		
보호위원 역할	보호위원회의 모든 역할(위원장 및 사실확인 등)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주요 활동 경력	※ 기재 경력을 증명할 증명서 제출 필수 ([서식2]활용) ※ 동일 기간 경력 중복 시, 한 개의 경력만 인정		
	예시) - ○○학교 학생생활부장 (2020.~2023.) -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 2년 (2022.~2023.) - ○○○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2020.~2021.)		
타 조직 활동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서부 지역교권보호위원,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활동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지 원 서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지원함 2024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발급번호:			
<b>경 력 증 명 서</b>			
성 명	한글		주 민 등 록 호 -
	한자		
주 소			
근 무(경력) 기 간		직급(위)	관련 경력
부 터	까 지		
		예) 교장,교감,교사	예) 생활지도 업무(교장, 교감, 부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담당교사)
		예) 학부모	예) ○○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예) 전문가	예) ○○대학 조교수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4년    월    일			
<b>○ ○ ○ 학 교 ( 기 관 ) 장 ( 직 인 )</b>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경력 산출 기준일: 발급일 기준(2024. 3. 27.기준) 10년 이내

				접 수 번 호	
<b>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역할 계획서</b>					
성 명	한 글		연 락 처	휴대폰	
	한 자				
지원 영역	<input type="checkbox"/>	현직교원 (특수 <input type="checkbox"/> / 상담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퇴직교원 (특수 <input type="checkbox"/> / 상담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학부모(자녀가 특수교육 대상자일 경우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전문가(성 <input type="checkbox"/> / 상담 <input type="checkbox"/> / 분쟁조정 <input type="checkbox"/> / 특수교육 <input type="checkbox"/> )			
<p>※ 작성 방법</p> <p>▶ 내용(필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지원 동기</li> <li>2. 교권보호(침해) 관련 활동 전문성(본인의 활동 경험 등)</li> <li>3. 교원지위법에 대한 이해</li> <li>4.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활동 계획(참석, 위원 역할수행 등)</li> </ol> <p>▶ 분량: A4용지 2쪽 이내(3쪽부터는 평가하지 않음)</p> <p>▶ 글씨크기: 14pt, 줄간격 180%, 글자색: 검정</p> <p>- 자필 작성 가능</p> <p>※ 내용 기재시 유의 사항</p> <p>▶ 개인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 기재 금지(성명, 소속 등)</p> <p>▶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음</p> <p style="text-align: center;">★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미기재 항목 ★</p> <p>가. 지원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인 조건</p> <p>나. 지원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p> <p>다. 지원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p>					

위의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선발, 구성, 운영
-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소속(직장), 직위(직급), 연락처, 주요 경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제공 시부터 위원 임기 종료 시까지
- 정보주체의 권리  
상기한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심의위원 위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작성자 (인/서명)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서식5] 위임장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준용)

# 위 임 장

위임 내용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선발 각종 제출 서류 대리 접수	
위임 받는 사람 (대리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핸드폰/전화번호)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위임하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핸드폰/전화번호)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선발 각종 제출 서류 대리 접수를 위임합니다.

2024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위임받는 사람(대리 접수자) 신분증 지참

유의 사항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54g/㎡]

##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2. 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3.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5.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① 법 제18 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교원
  -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3.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학부모
  -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5. 해당 교육지원청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3. 그 밖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제15조의2(소위원회)**

-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 ③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 ④ 소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